

인공신장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관련 FAQ 1-2판

1. 저희 인공신장실 환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COVID-19)로 확진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대응지침(1-3판)에 따라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는 인공신장실에 내원하지 말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이송수단을 결정하고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인실 격리투석을** 해야 합니다. 확진환자의 혈액투석시에는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병실에서 개인보호구(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보호복)을 착용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이미 인공신장실에 내원하였다면 타 환자와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도록 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내 감염관리실과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동선을 따라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만, 현재 늘어나는 **확진자수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해당병원과 반드시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기관에서 혈액투석중인 다른 환자들의 접촉자 유무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며, 접촉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를 코호트격리투석을 시행해야 합니다.

2. 저희 인공신장실에서 COVID-19 확진자가 나와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타 투석기관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투석환자의 의료기관간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타기관으로 이송은 감염위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COVID-19에 노출된 인공신장실에서는 환자가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보호구(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성 방수성 긴팔가운)을 착용하고 **코호트격리투석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접촉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연락 하여 신고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3. 코호트격리투석이란 무엇인가요? 1인실 격리투석과 어떻게 다른가요?

☞ **코호트격리투석(cohort isolation)**이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되는 **접촉자를 접촉하지 않은 타 투석환자와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촉자란 아직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증상의 발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환자들로 접촉하지 않은 투석환자와는 별도의 시간에 투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40명의 투석환자가 있는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20명의 투석환자가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20명의 비접촉자가 투석을 모두 마친 이후 투석실을 소독한 뒤 접촉자 20명을 적절한 침상간격을 유지한 채 투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COVID-19로 확진된 환자나 증상이 있는 접촉자(의사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에서 별도의 인공투석기로 1인실 격리투석(single room isolation)을 하게 됩니다.

4. 코호트격리투석시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요?

☞ 코호트격리투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 4종(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고**

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성 방수성 긴팔가운)을 입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일회성 방수성 긴팔가운과 장갑을 새 것으로 바꿔서 착용하도록 합니다.

5. 코호트격리투석시 투석후 기계나 격리공간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크리넬로 모든 투석기와 침대, 컴퓨터 등 표면을 닦는 소독을 매일 시행해야 하며, 소독 후 린넨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또한 코호트격리투석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매 격리투석 조가 바뀔때마다 소독 및 청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코호트격리투석 중 환자 한 분이 열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촉자로 코호트 격리투석 중 발열환자는 **의사환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격리투석을 할 수 있다면 1인실 격리투석을 시행해도 됩니다.

7. 인공신장실 투석환자가 투석실 내원전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외여행력, 대구/경북지역 방문력, 신천지 교도 등 모두 부인합니다. 이럴 때 COVID-19 검사를 해야 하나요? 투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응지침(1-3판)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며, 증상이 없는 타 투석환자와의 접촉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도록 하고, COVID-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환자와 별도의 시간에 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투석을 시행**합니다. 1)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2) 진단검사에서 2회 음성이 나오면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검사에서는 2회 음성이 나왔는데, 환자가 여전히 관련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COVID-19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의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투석환자에서 COVID-19 가 발생하였을 때 파급될 위험도가 크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격리 해제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 접촉력이 없는 투석환자가 열이 나서 투석실 내원전 선별진료소에 보내서 일차 COVID-19검사는 음성이 나왔는데 발열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음성 나올때까지 투석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대응지침(1-3판)상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며, 최종음성 나올 때까지 투석을 **가급적 보류**하거나 보류가 힘들다면 **격리투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음성이 나올 때 까지는 야간격리투석을 시행하고, 조사대상 유증상자 지침에 준해 증상이 호전되고, 2회 음성이 나오면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격리투석을 유지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COVID-19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음성 확인 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접촉력이 없는 투석환자가 혈액투석 도중 발열이 확인되어 선별진료소로 보내 검사 예정입니다. 이 환자와 같이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은 격리를 해야 하나요?

☞ 대응지침(1-3판)상 해당 환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속하며, 증상이 호전되고 2회 검사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다른 환자와 별도의 시간에 따로 투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

다. 발열이 확인된 시간에 같이 투석한 환자들은 대응지침(1-3판) 사례정의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따로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10. 인공신장실에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투석환자 한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의 투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응지침(1-3판)상 접촉자에 해당합니다. 인공신장실에 입실하기 전 선별진료소 또는 질본 역학조사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급적 투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투석을 시행하며, 무증상 개별접촉 투석환자의 경우에는 자체 인공신장실에서 다른 환자의 투석이 끝난 뒤 이 환자의 투석을 시행합니다. 이 때 환자는 확진자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 별도의 교통수단이란 자가용 또는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엠블런스 등을 말합니다.

위 FAQ는 배포당시 감염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전국 인공신장실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확인하에 위 FAQ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2020.3.6 개정시 내용 변경